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48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백혜련 · 김원이 · 문금주
김영배 · 김영진 · 허성무
송재봉 · 노종면 · 김남희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됨에 따라 검증 이전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판로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 · 품질 · 성능 · 효능 등에 관한 시험 · 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 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

· 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회복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2.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3.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 지원
 4.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요건·절차·범위,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 간 협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 · 회복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시험 · 검사 결과</u> <u>2.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정보</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u>

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 ·
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
청

3.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
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
부 지원

4.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26조제2항
에 따른 기관·단체에 그 업무
를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소
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제2항제1호에 따
른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원의 대상·요건·절차·범위,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및 기관 간 협조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